

보편적 기본소득은 미래의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Gerhard Bosch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일숙련직업훈련연구소(IAQ) 연구위원)

■ 복지국가 vs. 보편적 기본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심각한 일자리와 소득불안정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였으며,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시민의 경제 및 사회적 안녕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적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국가별로 제도의 규모나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복지국가에서는 현물급여와 함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무상교육은 가장 중요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복지국가의 기본적 특징은 사회보험으로, 대부분 의무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재정이 충당되며 질병, 사고, 실업 및 노령 기간에 가입자와 그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빈곤예방 프로그램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개인 누진과세 제도도 현대 복지국가의 중추적 구성 요소다. 끝으로 최저임금, 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리, 고용보호법, 과도하게 유연한 근로형태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근로기준들도 복지국가의 주요 요소다.

이러한 형태의 복지국가는 미국이나 아시아의 선진국들보다 서유럽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복지국가는 노동의 시장 변동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노동의 탈상품화에 기여하

며(Esping-Anderson, 1990)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소득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높은 근로의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예산 재정마련 기여하며 어려운 사람들만 공적이전을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급여수준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여성을 포함하여 생산가능연령에 속한 모든 성인들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국가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대한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학자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 : UBI)’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UBI는 아무런 의무도 전제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UBI는 자산조사형 급여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소득이전의 경우에는 동거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UBI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UBI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UBI 재정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UBI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상의 낙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이점들을 약속한다. UBI가 탄탄한 경제, 빈곤 완화, 소외계층의 탈상품화, 불필요한 절차 축소, 임금 노동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며, 따라서 미래의 모든 소득불안정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van Parijs & Vanderborgt, 2017).

UBI에 대한 이와 같은 매혹적인 수식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낙원에서처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래에서는 UBI 주장의 기본 전제들,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 폐지 비용을 포함한 UBI의 비용, UBI의 유력한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UBI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 모두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van Parijs & Vanderborgt의 저서(이하 vPV 2017)를 주로 다룰 것이다. van Parijs는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 BIEN)’의 창시자 중 한 명이며, BIEN은 2004년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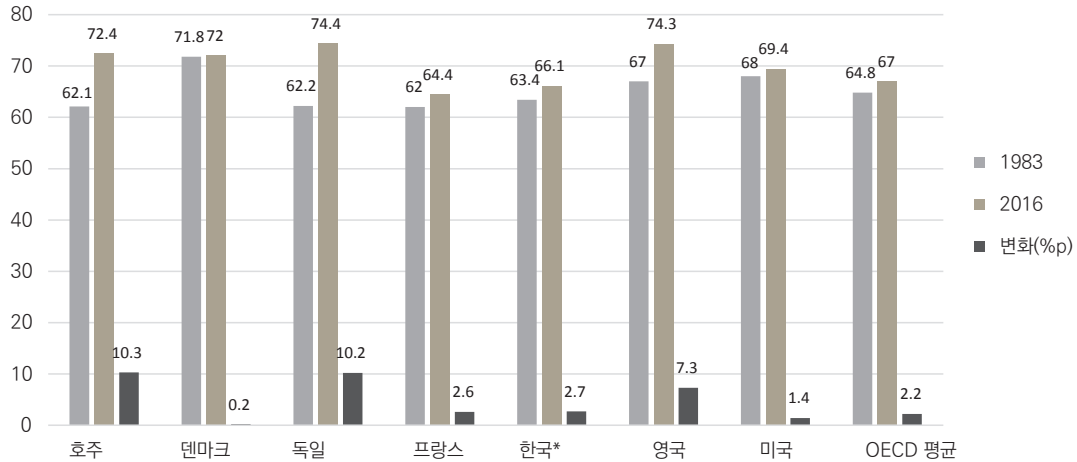
■ 의문의 여지가 있는 UBI 개념의 전제들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 폐지와 같이 급진적인 주장을 담은 제안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오한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vPV 2017은 UBI를 선호하는 이유를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설명했다. ① 디지털화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②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③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비효과적이며 굴욕적인 자산조사 방식, ④ 모든 개인이 국가의 지원 없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 등이 그러한 이유다. 필자는 이러한 전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①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은 이미 과거에 예언된 바 있다(Rifkin, 1995). 그러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받는 청년층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생산가능연령(15~64세)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선진국에서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한 데에 있다(Gordon, 2016).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소로우(Robert Solow)는 이미 1987년에, “생산성 관련 통계를 제외하고 어디에서나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Solow, 1987). 생산성이 일부 업종, 특히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들에서 생겨난 일자리 감소는 이제까지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로 충분히 보완되어 왔다. 구조적 변화를 노동의 종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②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러한 중요한 전제와 관련하여 그 저서에서 찾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는, “보수의 수준이 최저임금법, 단체교섭 및 높은 실업급여 수준에 의해 확실히 보호되고 그러한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 대량실업이 초래되기 쉽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뿐이다(vPV 2017: 5). 이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큰 이슈들과 관련하여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실증적 연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해 최근 실시된 메타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한 예로 Belman & Wolfson은 영어로 작성된 200건이 넘는 연구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그림 1] 주요국의 고용률 비교(1983년과 2016년)



주: * 한국의 경우는 1983년이 아니라 1990년 자료임.

자료: OECD(1997, 2017).

실시한 결과, “미국의 경우 10대와 청년층에 한정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전반적인 고용 탄력성은 영에 가깝게 낮으며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Belman & Wolfson 2014: 402). Dolton et al.(2012)은 영국의 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뒤, “1999년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평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이후 작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요약하였다. 다른 노동시장제도가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가령 단체협약 적용률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국가들(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고용률은 기타 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강력한 고용 보호는 내부 노동량의 유연성 및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촉진하기도 한다. 높은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에게 자신의 숙련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숙련퇴화(skill obsolescence)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상황에서도 경직적이고 과도한 규제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은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기존 복지국가의 과도한 보호가 아니라 부족한 보호에 있음을 나

타낸다.

- ③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비효과적이고 굴욕적인 자산조사 방식: 저자들은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대부분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은 가입자의 부담금 납부를 통해 마련되며 가입자는 제약 없이 현금이전 및 현물 급여를 지급받는다. OECD 회원국은 모든 국민에게 초,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호와 같은 근로기준은 가계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고용상 지위와 연동된다. 이러한 권리와 혜택은 대부분 개인을 기준으로 할 뿐 자산조사에 의하지 않으며, 시장 변동과 가부장적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립을 강화한다. 특히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자산조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전과 현물수당의 비중이 자산조사형 급여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장기실업 및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면서, 자산조사형 급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사회보험이 미비한 잔여주의형 복지국가(residual welfare states)의 경우에만 국민들에게 대부분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곤궁(need)이 수혜 자격 및 혜택의 기본조건이며, 따라서 지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형태의 복지국가에서는 자산조사가 때로는 굴욕적이고 침해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통제는 UBI에 대한 요구를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며 실업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 ④ 모든 개인이 국가의 지원 없이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 UBI 제안은 모든 인간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를 자주성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데, Goodman(1972)에 의하면 자율성이란 “실제 문제와 가용 수단을 알지 못하는 당국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van Parijs & Vanderborght(2017)에는 중앙집권적인 복지국가를 협동조합과 같이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권화된 형태의 정치적 조직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국가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믿음은 결국 개인들에게 ‘생색을 내는’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이전의 형태로 UBI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vPV는 “현물로 제공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최저 소득을 감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2017: 13)와 같이 모든 현물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폄하할 수 있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지닌 문제점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처해진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 이용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방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유하고 인맥이 탄탄한 부모들 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지니며 그러한 우위와 불리함은 인생 전반을 거쳐가면서 더욱 강화되고 때로는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사다리의 상향 이동을 어렵게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될 때는 부모를 선택할 때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 사고 또는 만성적 질병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향후 취업 능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폐지되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별 제도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및 청년들을 위한 학업 및 사회적 근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자신감과 역량을 높여주며,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자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폐지하게 되면 사회의 가장 약한 집단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될 것이다.

■ UBI의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

부유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UBI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호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급 수준이 매우 높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vPV 2017(2017: 11)에서는 GDP의 약 4분의 1 수준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1,163달러, 영국의 경우 910파운드에 해당한다. 독일의 대형 잡화점 체인 DM의 소유주인 베르너(Werner)는 자신의 저서에서 공동 저자와 함께, 아동 및 연금수령자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월 1,000유로의 UBI를 제안하였다(Werner

et. al., 2017). vPV(2017)와 베르너 모두 UBI가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기 때문에 자체재원 조달(self-financing)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UBI의 주창자 일부는 누진소득세를 통한 세입 마련을 원하는 반면 다른 주창자들은 부가가치세(VAT)를 통한 재정 충당을 원함으로써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르너는 법인 및 개인 소득세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VAT 외에 모든 세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UBI 재정 조달을 위한 이러한 제안들은 여전히 모호하다. UBI의 주창자들은 이 주제를 수십 년간 논문의 주제로 다루면서도 UBI에 내재된 위험요소는 물론이고 그 비용과 편익을 상세하게 밝히는 데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vPV(2017)은 경제성장이 약간 더디어질 수는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기본소득의 재원이 고갈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2017: 133). 이러한 효과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며 생산가능연령대 개인의 대부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대충 계산해보더라도 독일에서 1,000유로의 UBI는 GDP의 31.4%에 해당하며 이는 현재 독일 사회보장 예산을 약 1,000억 유로 초과하는 액수다. 무모한 가설이라 할 수 있는, 부의 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적 모델(static model)을 활용해 VAT로 UBI의 재정을 조달하는 경우를 예측해보면 VAT가 기타 모든 세금을 대체하는 경우 VAT 세율이 현재 19%에서 약 150%로 인상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VAT가 소비, 투자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재정 관련 연구에 의하면, VAT는 일반적으로 역행적 분배 효과(regressive distributional effect)를 지니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1,000유로의 UBI는 VAT의 6~7배 인상으로 인해 그 가치가 크게 절하될 것이며,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UB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으리라 보기는 힘들다. 월 1,000유로는 중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축소된 형태로 뒷문으로 다시 출현하게 되며, 이는 UBI의 주창자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다. 베르너 등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기본 건강보험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끝으로 이미 UBI를 초과하

는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한, 한 세대가 UBI와 함께 동시에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혜택의 재정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델의 전환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사업은 아니다.

■ UBI의 유망한 대안

조건부 기본소득, 최저급여, 특정한 보편적 혜택이나 서비스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UBI의 유사 개념들은 특히 유망한 대안으로 보인다.

- ① 보편적 아동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for children*): Atkinson(2015)이 제안한 것으로, 아동 빈곤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 대해 그 부모에게 높은 수준의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이 수당은 저소득 가계에 대해서는 면세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계층에 대해서는 최고 6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 ②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무상 서비스(*universal services at no charge for all citizens*): OECD 회원국에서는 초, 중등교육과, 때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등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건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무상 서비스가 제공된다(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가 모든 시민의 안녕과 동등한 기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장벽이 제거되길 원한다.
- ③ 보편적 근로권(*universal employee's rights*):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며, 최저임금, 고용보호 또는 육아 및 훈련휴가와 같은 고용상 지위와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이 권리들이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권리들이 핵심 근로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면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배제된다면, 후자의 집단이 속하는 이차적 부문의 근로기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초래될 것이다.

- ④ 조건부 기본소득(*basic but conditional income*): 자신의 소득과 자본(‘자산’)이 특정 하한선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산조사 방식을 피하기 위해,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 제도가 제안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산조사형 복지 부조의 역할은 미약하게만 남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요소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에서는 양호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최저 수준이 심지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의회가 그 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입한 경우도 있었다. 저개발국의 경우, 이러한 조건부 기본소득은 전체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조건부 현금이전제도인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빈곤가구는 반드시 자녀의 학업과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용된 결석률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 자격이 박탈되며 현금 지급도 중단된다.
- ⑤ 최저급여(*minimum benefits*): 연금제도에서 흔히 발견된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특정 근무기간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는 퇴직 후 빈곤 예방을 위해 굴욕적인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최저 연금을 받는다.

위와 같은 대안은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는 큰 이점이 있다. 소요 비용은 감당이 가능한 정도이며 경제발전 및 재정수준에 따라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 조건부 빈곤예방 프로그램은 소득보장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보건과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다. UBI로는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조건부 빈곤예방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의 주거 상황이나 인프라 등을 개선하거나 지역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① 일자리는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감은 사회에 유용하게 기여해 본 경험에서 비롯되고, ②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UBI 제안의 밑바탕이 되는 인간에 대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 결론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인구 및 기후 변화, 국제 무역의 불균형 조정, 소비 패턴의 변화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과 같은 다른 동인도 분명히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금 노동의 종말을 예고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세계에는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너무도 많아서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

UBI는 미래의 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UBI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노동의 종말, 노동시장 규제 및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국민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는 주장과 같은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에 근거하고 있다. UBI의 주창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사실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모든 수요가 하나의 현금이전제도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모두의 수요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UB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여파로 이어질 것이다.

UBI를 주창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논지를 구체화하고 탄력적인 비용-편익 산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더욱 정교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신 자선을 계속 설파하고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다루면 그 단순한 논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변화의 핵심 요소인 힘과 주체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데 누가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겠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UBI 개념에 혹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연금과 의료보장이 축소되고 근로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러한 몽상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납부는 원치 않으면서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환영하는 부유층과,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와 불안정 근로자들만이 UBI의 지지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는, 매우 낮은 수준의 UBI가 지급되면서 탈규제화된 경제하에서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불평

등이 줄어든 진정한 자유, 가능성 및 기회”(vPV 2017: 107)라는 UBI의 목표에는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건강한 자가 타인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당하며, UBI 주장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로부터 주의를 빼앗는 소모적인 주장일 뿐이다. **☐☐**

참고문헌

- Atkinson, T.(2014),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man, D. & Wolfson, P. J.(2014), *What Does the Minimum Wage Do?* Michigan: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Dolton, P., Rosazza-Bondibene, C. & Wadsworth, J.(2012), “Employment, Inequality and the UK National Minimum Wage over the Medium Term”,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1), pp.78~106.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odman, P.(1972), Selected passages from Little Prayers and Finite Experience, <https://www.panarchy.org/goodman/autonomy.html>
- Gordon, R. J.(2016),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und Oxford.
- OECD(1997), *Employment Outlook*, Paris.
- _____(2017), *Employment Outlook*, Paris.
- Rifkin, J.(1995),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Putnam Publishing Group.
- Solow, R.(1987), “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Book Review*, July 12, 1987, p.36.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 Werner G. et. al.(2017), Sonst knallt’s! Warum wir Wirtschaft und Politik radikal neu denken müssen, Edition Eichborn.